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2. 1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1.1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.1.21.
- 다. 상정일자 : 제201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(2016.2.1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김 정 일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,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 명시

- 현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3월 16일로 종료됨에 따라 5년 연장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‘2021년 3월 16일까지’로 명시
- 2)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
- 3)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
 - 교육지원과장 → 교육청소년과장
 - 교육과학기술부장관 → 교육부장관
- 4) 일부조문 수정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삭제
(2015.12.10 공포, 2016.1.1 시행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까지로 명시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